

## 규약 변경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# 1. 변경 대상 펀드

| NO | 펀드명칭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 |

### 2. 변경 사항

| 항목                   | 정정전   | 정정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명칭                   | <u>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)</u><br><u>2호</u>                     | <u>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</u>  |
| 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| <p>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부로 한다.</p> <p>1. ~4. (생략)</p> | <p>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부로 한다.</p> <p>1. ~4. (생략)</p> <p><u>5. 모자형</u></p> <p><u>6. 종류형</u></p>  |
|                      | <u>(신설)</u>   | <p><u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부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<u>1.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 <p><u>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부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CLASS A 수익증권: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</u></p> <p><u>2. CLASS C 수익증권: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</u></p> <p><u>3. CLASS C-e 수익증권: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</u></p> <p><u>4. CLASS C-1 수익증권: 최초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</u></p> <p><u>5. CLASS C-F 수익증권:</u></p> <p><u>1) 외국환거래규정 제1-2조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</u></p> <p><u>2)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</u></p> <p><u>3)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</u></p> <p><u>4) 집합투자기구, 변액보험</u></p> <p><u>5)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(Wrap Account)</u></p> <p><u>6)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</u></p> |
| 제10조(수익)             | ① 집합투자업자는 (...) 예탁결제원을 명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집합투자업자는 (...)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<p>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   | <p>인으로 <u>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 | <p>하여 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CLASS A 수익증권</li> <li>2. CLASS C 수익증권</li> <li>3. CLASS C-e 수익증권</li> <li>4. CLASS C-이 수익증권</li> <li>5. CLASS C-F 수익증권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<p>(<u>신설</u>)</p>   | <p>⑤ 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  |
| <p>제16조(투자 목적)</p>     | <p><u>국내 주식</u>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 | <p><u>모투자신탁인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의 수익증권</u>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 |
| <p>제17조(투자 대상자산 등)</p> |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,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(이하 "국내주식"이라 한다.)</u></li> <li>2. <u>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 (단, 주식관련사채권 및 신용평가등급 BBB- 미만 사채권 은 제외한다)</u></li> <li>3. <u>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 이라 한다.)</u></li> <li>4. <u>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(단, 신용등급이 A2- 이상인 것에 한하며, 이하 "어음" 이라 한다.)</u></li> <li>5. <u>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, 채권관련 파생상품(이하 "장내파생상품"이라 한다.)</u></li> </ol> |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의 수익증권</u></li> <li>2. <u>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u></li> <li>3. <u>법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</u></li> </ol>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6.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, 채권관련 파생상품(이하 “장외파생상품”이라 한다.)</p> <p>7. 금리스왑거래</p> <p>8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(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“수익증권 등”이라 한다)</p> <p>9. 환매조건부채권 매도</p> <p>10.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</p> <p>11. 증권의 차입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법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</p> <p>2. 금융기관에의 예치</p>  |   |
| 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취득한도)</p> | <p>1.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(신주인수권 및 공모주 포함)에의 투자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p> <p>3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p> <p>4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p> <p>5.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% 이하가 되도록 한다.</p> <p>6.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% 이하가 되도록 한다.</p> <p>7.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8.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</p> | <p>1.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의 수익증권에 투자한다.</p> <p>2. 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<p>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.</p> <p>9. <u>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10. <u>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u></p>  |             |
| <p>제19조(운용 및 투자제한)</p> |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<u>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p> <p>나. <u>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)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[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(이하"기업어음증권"이라고 한다)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],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과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.)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p> <p>다. <u>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비중(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,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</u></p> | <p>(삭제)</p> |

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.

3.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4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5.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

6.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7.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의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8.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9.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1호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|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제외) | <p>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</u>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4. (생략)</p> <p>5. <u>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</u>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</u>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4. (생략)</p> <p>5. <u>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</u>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|
|                   | <p>② <u>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,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10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③ <u>제18조 제5호, 제19조 제2호본문,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</u>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| (삭제)   |
| 제25조(판매 가격)       | (신설)   | <p>③ <u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</u></p>   |
| 제26조(환매 업무)       | (신설)   | <p>⑥ <u>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.)는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도록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.</u></p>   |

|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<p>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 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⑦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<u>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</u>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⑧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본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.</p> | <p>⑦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⑧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<u>모투자신탁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을 포함한 각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</u>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⑨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본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.</p> |
| 제30조(기준 가격 산정 및 공고)  |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   |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 <u>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</u> 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  |
| 제34조(이익 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 |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<u>제10조제3항</u> 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 |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<u>제10조제1항</u> 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  |
| 제35조(상환금 등의 지급)      |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<u>수익자 전원의 동의를</u> 얻어 <u>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</u>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.   |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<u>모투자신탁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을 포함한 각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</u> 얻어 <u>모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</u>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.  |
| 제37조(수익자총회)          | <u>(신설)</u>  |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<u>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u>  |

|          |   |  |
|----------|---|--|
|          | <p>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(...)</p> <p>④ 「상법」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(...)</p> <p>⑤ 수익자총회는 (...)</p> <p>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(...)</p> <p>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(...)</p> <p>⑧ 연기수익자총회의 (...)</p>  | <p>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(...)</p> <p>⑤ 「상법」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(...)</p> <p>⑥ 수익자총회는 (...)</p> <p>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(...)</p> <p>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(...)</p> <p>⑨ 연기수익자총회의 (...)</p>   |
| 제39조(보수) |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765%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.59%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</p> |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<u>다만,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,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<u>1. CLASS A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765%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75%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00%</p> <p>2. CLASS C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765%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.59%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00%</p> <p><u>3. CLASS C-e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765%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80%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00%</p> <p>4. CLASS C-1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765%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10%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00%</p> <p>5. CLASS C-F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765%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03%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</p> |



|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                  | <p>④ <u>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보수율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하며,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는 연 1.39%,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는 연 1.20%, 2013년 5월 3일부터는 연 1.00%로 인한다.</u></p> |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00%</p> <p>④ <u>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보수율은 2011년 5월 2일까지 상기 비율을 적용하며,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는 연 1.39%,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는 연 1.20%, 2013년 5월 3일부터는 연 1.00%로 인한다.</u></p>  |
| 제40조(판매 수수료)      | <p><u>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</u></p>   | <p>① 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② CLASS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의 100분의 1범위로 한다.</p>    |
| 제41조(환매 수수료)      | <p><u>(신설)</u></p>   | <p>④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전환의 경우 제25조의2 제6항을 적용한다.</p>   |
| 제42조(기타 운용비용 등)   | <p>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</p>   | <p>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 <u>다만,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.</u></p>  |
|                   | <p><u>(신설)</u></p>   | <p>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“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”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</p> <p>1.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</p>  |
| 제45조(집합 투자기구의 해지) | <p>① 1.~2. (생략)</p> <p><u>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</p>   | <p>① 1.~2. (생략)</p> <p>3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p> |

|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|--|--|
|                  | <p>③ <u>제1항제3호의 규정</u>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 <u>제1항제3호의 규정</u>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 | <p>③ <u>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</u>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 <u>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</u>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 |
| 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| <p>② 1.~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</p>   | <p>② 1.~4. (생략)</p> <p>5. <u>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자투자신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</u></p> <p>6.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</p>   |
| <부칙>             | <u>(신설)</u>  | <u>제1조(변경계약의 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1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   |

### 3. 효력 발생일

2011년 02월 23일

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규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*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 (주)**